

## 「안심 고시원 지원사업」 참여자 모집 공고

거주환경이 열악한 노후 고시원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「안심 고시원 지원사업」 참여자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2024. 4. 5.

서울특별시

### 1. 사업개요

- 사업내용 :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고시원 인증 및 공사비용 보조
- 지원규모 : 예산범위 내
- 접수기간 : 2024. 4. 5.(금) ~ 5. 10.(금)
- 지원내용
  - 성능개선 공사
    - 단열, 방수, 창호, 설비 공사 등 고시원의 성능을 개선하는 공사
    - ※ 단, 성능개선 공사가 포함되지 않은 단순 내부마감 공사만 시행은 지원 제외
  - 안전시설 공사
    - 화재 경보기, 가스누설 경보기, 완강기, 방화문 등 소방안전시설 설치 공사
    - ※ 의무설치 기준인 스프링클러 설치 비용은 지원 제외
  - 편의시설 공사
    - 공용시설의 싱크대, 위생기구(양변기, 세면기)등 노후화로 인한 교체 및 설치 공사
    - 냉·난방 관련 시설 설치 공사
    - 내부 단차 제거, 안전 손잡이 설치 등

## 2.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

□ 대상지역 : 서울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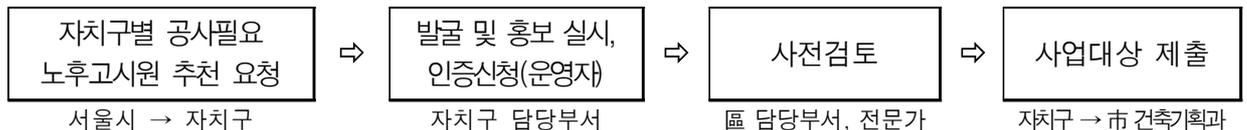
□ 사업대상 : 서울시 소재 고시원\*으로 고시원업 신고하여 영업 등록을 마친 고시원

\* 「건축법」 상 다중생활시설 :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㎡ 미만인 시설

- 사업대상 신청 기본요건

- ▶ 무허가 건축물, 위반건축물, 지하층에 고시원 용도가 있는 건축물은 대상 제외
- ▶ 3년 이상 고시원업 유지 가능한 고시원(임대차계약서, 소유자 확인 필요\*)
  - \* 2018.10.16.(「상가임대차법」 개정) 이후 임대계약된 고시원은 소유자 확인 제외
- ▶ 사업 참여를 위한 소유자 동의가 필요하며, 신청서 등 서류는 고시원 운영자가 작성

- 사업대상 제출 절차



□ 지원대상 : 사업대상 고시원 중 지방보조금 심의 및 안심고시원 인증위원회 심의 거쳐 최종 안심고시원\*에 선정된 고시원

\* 안심고시원 : 안심고시원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리모델링 또는 신축 공사한 고시원 중 ‘안전·안심·안락’ 분야에 대해 전문가 현장점검 결과 인증기준 90점 이상을 득하고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 고시원

□ 지원금액

- 지원내용 : 기존고시원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등 공사
  - 건축물 성능개선·안전시설·편의시설 공사
- 지원비율 : 실 공사비용의 33% 이내(1호실당 최대 300만원)
- 지원금액 : 1개 고시원 당 최대 6,000만원(20호실 기준)

※ 인증기준 만족하고 인증위심의 거친 신축고시원<sup>1)</sup>은 안심고시원 인증 명패 수여

1) 서울시 건축조례 제3조의2 개정규정을 적용 받아 건축허가, 건축신고, 용도변경 된 다중생활시설은 신축고시원으로 구분하고 그 외 고시원은 기존고시원으로 분류

### 3. 지원 제외대상

#### □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, 건축물의 경우

- 현장점검 시 건축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
- 지하층에 해당 고시원 용도를 포함한 건축물
- 신축 예정지 등 안심고시원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건축물
- 재개발, 재건축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·고시된 지역
- 가로주택정비사업,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조합설립인가 지역

#### □ 무허가 건축물,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건축물

- 단, 현장 조사를 거쳐 시정이 용이하다고 판단되고, 소유자의 시정 의사가 있는 경우 지원(완료 신청서 제출 이전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해제 필요)

#### □ 건축물의 성능개선 공사가 포함되지 않은 단순 건축물 내부공사

- 단열, 방수 등 성능개선 공사 포함되지 않은 단순 도배, 장판, 내부마감 공사 등
-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개선과 관련 없는 내부 방문 또는 창 교체공사
  - 현관문, 중문, 난방과 비난방 부분의 경계 창이나 문은 지원
  - 보안 강화를 위한 개별 도어락 설치는 지원
  - 고령자 이동 편의를 위해 문턱 제거 공사를 하는 경우, 방문 교체 공사비 지원
- 에너지효율 개선 효과가 없는 단순 전등 교체공사
  - 일반전등에서 고효율 기자재 인증 LED 전등으로 교체 시 지원 가능

### 4. 지원조건 및 절차

#### □ 지원조건

- 보조금은 안심고시원 리모델링 공사 목적 외 사용 금지
- 안심고시원 인증기준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계획 수립
- 사전·중간·사용승인 점검 등 현장조사 시 협조
- 안심고시원 지원대상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인증 신청서 제출
-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및 안심고시원 인증위원회 조건부 사항 이행
- 안심고시원 홍보를 위한 공사 전 과정 기록 및 홍보 등 활용, 홍보물 설치 협조

## □ 지원절차

### ○ 지원 및 지원대상 결정 단계

지원신청	검토/현장조사	보조금심의 상정	보조금 심의	결과 통보
견적서, 공사전 사진 등 포함 신청서 제출 (신청인→자치구)	⇨ 제출서류 검토 및 사전 현장조사 (자치구, 전문가)	⇨ 현장조사 의견보완 및 심의 상정 (자치구→시)	⇨ 대상자 선정 및 지원예정 금액 결정 (시)	⇨ 심의결과 통보 및 보조금 재배정 (시→자치구)

### ○ 공사 및 인증 결정 단계

착수신고	중간점검	공사완료/인증신청	검토/현장점검	인증위원회/보조금 지급
착수신고서 제출 및 공사시행 (신청인→자치구)	⇨ 공사 중 현장점검 실시 (자치구, 전문가)	⇨ 공사 완료 및 인증신청서 제출 (신청인→자치구)	⇨ 제출서류 검토 및 완공 현장점검 (자치구, 전문가)	⇨ 안심고시원 인증위원회 (시) 보조금 지급 (자치구→신청인)

## 5. 창호, 단열공사 등 자재 사용기준

### □ 자재 사용기준

- 창호, 단열공사 등 에너지효율 개선공사 시 최소 사용기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자재를 사용해야함

구분	최소 사용기준	권장 사용기준
창호	에너지소비효율등급 3등급	에너지소비효율등급 2등급
외단열	열관류율 0.56W/m <sup>2</sup> ·K 이하 (가등급 단열재 60mm 이상)	열관류율 0.37W/m <sup>2</sup> ·K 이하 (가등급 단열재 90mm 이상)
내단열	열관류율 1.13W/m <sup>2</sup> ·K 이하 (가등급 단열재 30mm 이상)	열관류율 0.68W/m <sup>2</sup> ·K 이하 (가등급 단열재 50mm 이상)
지붕 단열	열관류율 0.309W/m <sup>2</sup> ·K 이하 (가등급 단열재 110mm 이상)	열관류율 0.2W/m <sup>2</sup> ·K 이하 (가등급 단열재 170mm 이상)
바닥단열 (바닥 난방 공사 시 적용)	열관류율 0.68W/m <sup>2</sup> ·K 이하 (가등급 단열재 50mm 이상)	-
등기구	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 LED 조명	-

- 건축선 등 현장 여건으로 인해 적용이 어려운 경우, 건축물 현황에 맞춰 완화 가능

## 6. 신청 및 선정 방법

□ 접수처 : 관할 자치구 담당부서

□ 안심고시원 선정 방법

- 고시원 공사계획 등을 고려 보조금심의를 통해 지원대상 고시원 선정
- 공사완료 후 현장점검, 안심고시원 인증위원회를 통해 최종 안심고시원 선정

□ 제출서류

구 분	제출서류
지원신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[서식 제1-1호] 안심고시원 인증 지원 신청서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공사계획서(공사 전·후 평면도, 공사 전 주요실 사진, 건축물 외벽 사진)</li> </ul> </li> <li>◦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, 고시원사업자등록증</li> <li>◦ 건축물대장, 건물등기부등본</li> <li>◦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(2018.10.16. 이전 임대계약된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3년 이상 고시원업 유지 가능함을 입증할 임대차 계약연장 확인서 등 함께 제출)</li> <li>◦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사본(최근 영업 기준 1년)</li> <li>◦ 공사 견적서(서울시에서 제공한 양식 사용)</li> <li>◦ [서식 제1-2호] 안심고시원 지원사업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동의서</li> <li>◦ [서식 제1-3호]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</li> <li>◦ 기타 구청장이 안심고시원 지원 자격 등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</li> </ul>
착수신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[서식 제2-1호] 안심고시원 인증 착수 신고서</li> <li>◦ 공사 계약서, 공사 하자보증보험증권</li> <li>◦ 착공신고필증</li> </ul>
완료신청 (인증신청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[서식 제3-1호] 안심고시원 공사완료 및 인증 신청서</li> <li>◦ [서식 제3-2호] 안심고시원 공사 전·중·후 세부사진</li> <li>◦ [서식 제3-3호] 안심고시원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보고서</li> <li>◦ 최종 공사 견적서,공사 하자보증보험증권(변경)</li> <li>◦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, 전자세금계산서 등 공사비 지급 증명 서류</li> <li>◦ 건축허가(신고) 사용승인 필증</li> <li>◦ (해당 시) 공사업체 변경 시 계약서</li> <li>◦ (해당 시) 창호 공사가 포함된 경우, 설치 창호의 모델별 효율관리기자재 신고 확인서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한국에너지공단에서 2021.10.1. 이후에 발급한 것만 유효</li> </ul> </li> <li>◦ (해당 시) 안전시설 등 설치명세서,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</li> <li>◦ (해당 시) 고시원 생활안내서, 주거복지 관련 안내서, 거주자관리카드</li> </ul>

## 7. 유의사항

- 동 사업은 신청자와 시공업체가 자발적으로 계약 체결하여 신청하며 서울시는 안심고시원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시공업체를 별도 지정하지 않음
- 공사의 대금 지급, 사후관리, 하자보수와 관련해서는 당사자간 계약사항에 해당하므로 서울시에서 관여하지 않음
- 신청한 보조금은 보조금심의 또는 인증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감액될 수 있음
- 신청자는 신청한 내역과 동일한 내용으로 시공하여야 하고 당초 사업계획 중 공사 기간, 시설 내역, 시공사 등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사전에 자치구와 서울시로 제출하여야 함
- 신청자는 시공완료 후 시공한 내역대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서울시와 자치구의 모니터링 결과 미유지 발견 시 인증 결과대로 재시공하여야 함
- 보완공사 후에도 인증기준 충족을 못하거나 안심고시원 자격 포기 시 인증고시원에 부여하였던 보조금 등 인센티브 내역은 환수 조치됨
- 인증 받은 날로부터 1, 만료 이전 60일 이내에 재인증 신청하여 인증위원회 거쳐 재인증 하여야 함

## 8. 안심 고시원 지원사업 신청문의 및 접수처

자치구	부서	전화번호	자치구	부서	전화번호
강남구	건축과	02-3423-6168	서대문구	건축과	02-330-8931
강동구	건축과	02-3425-6095	서초구	건축과	02-2155-6835
강북구	건축과	02-901-6895	성동구	건축과	02-2286-5634
강서구	건축과	02-2600-6558	성북구	건축과	02-2241-2888
관악구	건축과	02-879-6438	송파구	건축과	02-2147-3019
광진구	건축과	02-450-6603	양천구	건축과	02-2620-3557
구로구	건축과	02-860-2999	영등포구	건축과	02-2670-3704
금천구	건축과	02-2627-1633	용산구	건축과	02-2199-7502
노원구	건축과	02-2116-3897	은평구	건축과	02-351-7557
도봉구	건축과	02-2091-3662	종로구	건축과	02-2148-2782
동대문구	건축과	02-2127-4391	중구	건축과	02-3396-5804
동작구	건축과	02-820-9824	중랑구	건축과	02-2094-2293
마포구	건축지원과	02-3153-9405			